

서울특별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226호
-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3년 8월 14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 가. 2023.6.14. 제14차 세계대도시협의회(Metropolis) 총회에서 서울시가 차기 총회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함.
- 나. 이에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40주년 기념 총회’ 관련 업무 협약 효력 발생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사후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안)

- 행사명 :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총회(MWAC\*)  
\*MWAC : Metropolis World Anniversary Congress
- 행사일시 : 2025년 6월 중, 4일간 ※ 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
- 행사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주최/개최 :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서울특별시
- 참석규모 : 400명 내외(회원도시 지도자(시장 등) 약 147명 포함)
- 참가대상 : 147개 회원 도시 시장, 국제기구 관계자, 기타 경제·문화 초청인사
- 주요행사 : 40주년 기념행사, 총회, 이사회, 정책토론회, 정책현장 방문 등

#### 나. 추진경과

- 2023. 5. 3. 차기 개최지 신청 및 공동의장 출마 시장 서한 송부
- 2023. 5. 23. 메트로폴리스 의장 명의 개최지 선정 서한 접수 알림
- 2023. 6. 14. 제14차 메트로폴리스 총회 참석, 차기 총회 개최협약 체결
  - 서울시 대표단(신산업정책관) 참석, 사무국과 공식협약 체결(벨기에 브뤼셀)
  - 서울시의 공동의장 선정(최초) 및 이사 도시 재선정(5회 연임) 확정

#### 다. 업무협약 주요내용

- 협약서명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세계대도시협의회 간 창립 40주년 기념총회\*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이하 MWAC)
- 협약주체 : (주최기관)메트로폴리스 / (개최도시)서울특별시

○ 협약목적

-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총회 개최를 위해 메트로폴 - 서울특별시 간 상호 약속한 사항을 공식화하고, 40주년 기념총회의 조직 및 재정적 약속을 규제함.

○ 주요내용 ※ 2023.8. 서울시의회 승인 완료 시점부터 효력 발생  
[메트로폴리스와 서울시의 공동 책임]

- MWAC 2025 기획 및 조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선정 및 임명
- 견고하고 일관성있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함께 구체화하기 위한 콘텐츠 위원회 선정 및 임명
-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선정 및 임명
- MWAC 홍보를 위한 해외 사절단, 홍보물 출판 및 광고
- MWAC 웹사이트(행사 온라인 홍보 지원) 유지관리 및 호스팅

[서울특별시의 책임]

-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과업안내서(TOR)에 포함된 보충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MWAC의 기획, 관리, 조직에 대한 비용부담

- \* 행사관리 비용, 참석자 차량이동 서비스 및 PCO 고용
- \* 대표단장(최대 150명) 및 해외 연사(최대 50명)을 위한 숙박(4박)
- \* 총회에 참여하는 메트로폴리스 사무국 및 지역 사무국팀의 호텔 숙박
- \* 메트로폴리스 사무국에 사전준비비용(행정비용, 해외홍보비 등) 지급(350,000유로)
- \* 현지 교통편, 케이터링, 방문(견학) 및 활동
- \* 40주년 기념 갈라 행사, 환영 칵테일 또는 참석자 만찬
- \* 과업 안내서에 따른 후원참가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

- 과업안내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회의 기획사(PCO) 선정 및 임명
- 총회 전체 일정의 주요 일정 준수와 운영위원회, 콘텐츠 위원회 및 기타 임시위원회(커뮤니케이션 및 행사관리)에서 내린 결정 실행

#### 라. 기대효과

- (글로벌 선도도시 위상 강화) 대중교통, 스마트시티, 뷰티·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市 발전상 소개를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및 관광 유도
  - 2002년 제7차 서울 총회 이후 기술·문화 등 제반 분야의 발전 성과를 세계대도시협의회 회원도시(파리, 베를린, 마드리드, 브뤼셀, 베이징 등)에 소개하여 글로벌 위상 제고
  - 발전 분야의 체험 연계 프로그램(현장방문·홍보부스) 구성 및 만족도 높은 경험 제공을 통한 훗날 재방문 유도
- (상생도시 정책발전) 네트워킹 및 우수정책 공유를 통한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어젠다화 및 정책발전 기회 모색
  - ‘서울런’, ‘서울안심소득’ 등 市 우수정책사례 홍보를 통한 시정 핵심 가치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확산
  - 전세계 주요도시 시장들과의 네트워킹 및 해외 우수정책 청취를 통한 정책발전 및 파트너십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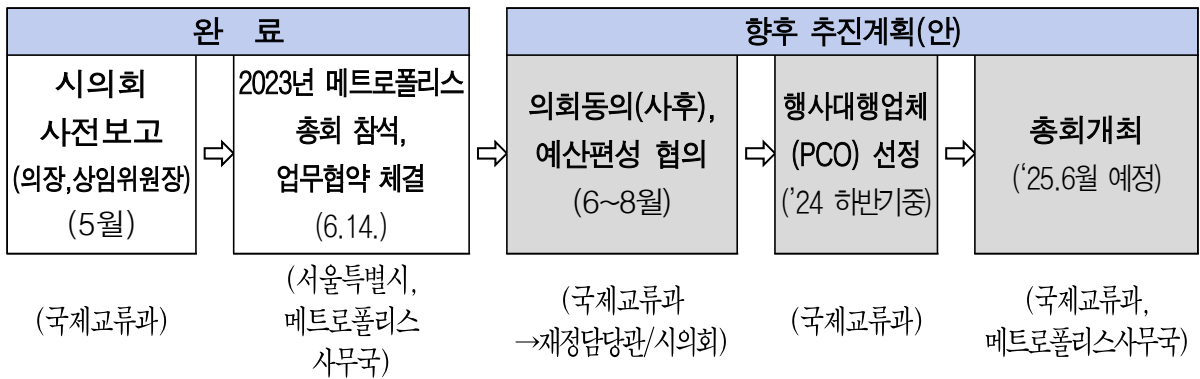
#### 마. 소요사업비

- 총 소요예산(안) : 1,705백만원
  - (국제부담금 : 5억원) 행사 준비를 위한 메트로폴리스 사무국 지급비용
    - ▶ 용도 : 행정비용, 해외홍보 위한 웹개발비,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 사전준비 방문 등

- (행사개최비용 : 12억원) 초청비, 행사운영비 등 대행업체(PCO) 계약 비용
- (예산편성계획) 2024년 17억원(국제부담금 5억원, 행사운영비 12억원)

## 바. 추진일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 ○ 행사의 개최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 업무협약의 체결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2)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조례

### ○ 협약체결에 따른 의회 사후동의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편성 반영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6.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Metropolis World Anniversary Congress, 이하 “기념총회”)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관련 업무협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사후동의<sup>1)</sup>를 받고자 제출됨.

---

1)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나. 총회 개최 경위와 협약 내용

- 세계대도시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the Major Metropolises, 이하 “협의회”)는
  - ▶ 세계 대도시의 경제발전, 환경보존, 삶의 질 향상 등 공통문제 해결과
  - ▶ 대도시 상호간 국제협력 및 교류 촉진을 통한 도시발전 도모를 위해 설립된 국제단체임(1985.4.18.).

### <세계대도시협의회 개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명 칭 : 세계대도시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the Major Metropolises, 약칭 “Metropolis”)</li><li>○ 설립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세계 대도시의 경제발전, 환경보존, 삶의 질 향상 등 공통문제 해결</li><li>- 대도시 상호간 국제협력 및 교류촉진을 통한 도시발전 도모</li></ul></li><li>○ 설 립 : 1985.4.18., 캐나다 몬트리올(1987년 서울시 가입)</li><li>○ 조 직 : 147개 회원도시(인구 1백만 이상 대도시 회원 가입 가능) / 사무국(바르셀로나 소재)<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사회 : 30개 도시(의장 : Ms. Claudia López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동의장(7) : 베를린, 바르셀로나, 테헤란, 몬트리올, 몬테비데오, 광저우, 가우텡</li><li>▶ 지역부의장(5) : 서울, 브뤼셀, 아비장, 마슈하드, 로사리오</li></ul></li></ul></li><li>○ 주요활동 : 총회(3년 주기),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매년 개최)</li></ul> |
|--|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1987년 협의회에 최초 가입 후 현재까지 이사 도시(1996) 및 아·태지역 부의장 도시(2011)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제7차 총회를 개최한 바 있음.
- 한편 서울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피해가 감소하면서 국제 교류가 재개되자 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를 도모하면서 그 일환으로 협의회의 총회 유치를 추진해왔음.

- 먼저 그 경과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기념총회 개최를 위해 차기 협의회 개최지 신청 및 공동의장 출마 서한을 협의회에 송부하고(2023.5.3.), 협의회 의장 명의의 개최지 선정 서한을 접수하는(2023.5.23.)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14일 제14차 협의회 총회에서 공동의장 당선과 기념총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그리고 협약 내용에는 서울시의 책임사항으로 ▶기념총회의 기획, 관리, 조직에 대한 비용부담, ▶과업안내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회의 기획사(PCO) 선정 및 임명, ▶총회 주요 일정의 준수와 운영위원회, 콘텐츠위원회 및 기타 임시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시행할 것을 명시함.

### <서울시 비용부담 사항>

- 행사관리 비용, 참석자 차량이동 서비스 및 PCO 고용
- 대표단장(최대 150명) 및 해외 연사(최대 50명)을 위한 숙박(4박)
- 총회에 참여하는 메트로폴리스 사무국 및 지역 사무국팀의 호텔 숙박
- 메트로폴리스 사무국에 사전준비 비용(행정비용, 해외홍보비 등) 지급(350,000유로)
- 현지 교통편, 케이터링, 방문(견학) 및 활동
- 40주년 기념 갈라 행사, 환영 칵테일 또는 참석자 만찬
- 과업 안내서에 따른 후원참가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

- 한편 기념총회는 2025년 6월에 개최예정이나 협약부속서(메트로폴리스 세계기념총회 개최를 위한 과업안내서)에 제시된 “국제회의 기획사(PCO)가 행사 개최 1년(12개월) 전부터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는 조건에 따라 서울시는 행사준비를 위한 국제부담금(5억 9백만원)과 행사운영비(11억 9천 6백만원)를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그 소요사업비를 동의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음.



## 다. 동의안의 타당성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이하 “의무부담조례”)는 ‘의무부담’을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제2조제3호).
- 또한 같은 조례 제3조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 외의 사무’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호).
- 이번 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총회의 경우 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4일에 확정되어 협약이 체결되면서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라는 의무부담조례의 사후

동의 사유에 해당하고,

협약서에 ‘2023년 8월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동 동의안은 사후 동의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 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은 ‘예산 외 의무부담’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동의안 제출시점(2023.8.16.)까지 투자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
  - 이는 협약이 7월 투자심사 의뢰서 접수 기간(4.28.~5.24.) 이후에 체결되고, 8월 투자심사위원회가 시의회의 의안 접수일정 마감(8.14.) 이후에 개최(8.17.)되었기 때문으로 시기상 다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기념총회의 유치는 서울시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적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나, 투자심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은 근본적으로 의회의 심의 권한을 훼손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기념총회를 통해 2002년 제7차 서울총회 이후의 서울의 발전상을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위상 제고와 관광을

유도하고, 세계대도시와의 네트워킹 및 ‘서울런’, ‘서울안심소득’ 등의 우수정책 공유를 통해 시정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글로벌 어젠다화 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의 기본계획상 일부 체험행사 외에는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바, 행사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9.30>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